중기부 R&D 유의사항 확인필증

기 술 명				
기 업 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TEL)	
T _	(e-mail)			

「BIRD 프로그램」신청을 위해 '중기부R&D 유의사항' 확인 결과, 프로그램 신청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업체명

대표자 (인)

^{1.} 본 확인서는 보증기관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중기부 R&D 지원사업의 유의사항을 확인한 기업이 보증기관 상담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 본 확인서의 제출여부와「BIRD 프로그램」평가진행, 보증지원, 정부R&D 선정 및 지원 여부 등과는 무관하며 향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⑦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①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 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①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기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마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 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 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관련 문의처 >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 주채권은행에 문의
-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⑧ 당해 연도에 수출지향형과제와 강소기업100과제가 동시 선정된 경우
 - * 2개 과제 중 1개 과제는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①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졸업제 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졸업제 미적용
- ②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 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 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수출성장-보증연계형 과제))를 지원받는 경우 상향식 지원제도 미적용
 - ** 졸업제 대상사업을 기 수행한 이력이 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 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단계	초기		도약 성숙		ì	초기		도약		성숙	
내역시업명	기딤돌	o ↓ x	전략형	o ↓ ×	TIPS	o ↓ ×	시장 대응형 소부장 일반	o *	시장 확대형 소부장 전략	of ↓×	수출 지향형

③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단, 졸업제 대상사업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 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수출성장-보증연계형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 수 미적용
- ***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연구장비활용바우처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사업(R&D기획), 산학연 플랫폼 협력(R&D),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R&D,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 (수출성장-보증연계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 ④ 상기 ③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 ②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④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⑤ 중소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⑥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및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 강소기업100+과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소부장 함께달리기 과제, 스케일업 팁스(출연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및 전략형(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연계, 백신원부자재)을 수행하는 기업은 졸업제 및 동시수행 과제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 ⑦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 ⑧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 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 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하여야 함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시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